

2006. 9.

其他案件審查報告書

○ 2006년 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(7차)안

總務委員會

2006년 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(7차)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2006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변경(7차)안	2006.8.25	2006.8.25	2006.9.8	2006.9.8	회계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1) 제안이유

- 2006년 공(시)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) 주요내용

1. 노은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(수질개선특별회계)

가. 사업개요

- 위 치 : 노은면 연하리 590-2일원
- 사 업 비 : 118억원(국비80.4, 도비17.1, 시비20.5)
- 기 간 : 2006 ~ 2007년
- 규 모
 - 부 지 : 1,180 m²(357평)
 - 처 리 량 : 140m³/일
 - 관로증설 : 오수 8km, 우수 2.4km

나.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주민 공중위생 향상 및 남한강 수질오염 방지

2.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(수질개선특별회계)

가. 사업개요

- 위치 : 주덕읍 당우리 외 7개면 16개소
- 사업비 : 457억원(국비361, 기금81, 도비2, 시비13)
- 기간 : 2006 ~ 2010년
- 사업량
 - 하수처리장 1개소
 - 하수도 시설 15개소
 - 관로증설 : 69.38m²
 - 시설부지 : 24,368m²

나.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충주댐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하수도 보급률 향상
- 지역주민 보건향상

3. 위생처리시설 개선사업(수질개선특별회계)

가. 사업개요

- 위치 : 봉방동 649-3일원
- 사업비 : 87억원(국비70, 기금12, 도비2.5, 시비2.5)
- 기간 : 2006 ~ 2008년
- 규모 : 200kℓ/일

나.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시설물 노후, 저류조 체류시간 부족으로 방류수 수질악화 및 악취심화
- 인근 지역주민 민원해소

4.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관련 국유림 추가매입

가. 사업개요

- 위 치 : 목별동 산 38-7
- 사 업 비 : 65,000천원
- 면 적 : 24,148m²(7,304평), 산림청 소유

나. 사업목적 및 필요성

- 사면 슬라이딩 현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4. 10월 불가피하게 사면보강(락앙카, 락볼트), 법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지 추가매입 필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노은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

- 본 사업은 정화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한포천을 통해 남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노은면 연하리 일원의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수도권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연하리 주민들의 공중위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.
-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하는 장소는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가 자연 유입될 수 있는 곳으로 관로시설 등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나
- 동 지역이 하천과 접해있어 하천 범람 등으로 침수피해를 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□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

- 본 사업은 수도권의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

- 2002년 11월 환경부의 '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'에 따라 2010년까지 읍면지역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
- 지역주민의 공중위생환경 개선과 남한강 상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.

□ 위생처리시설 개선사업

- 본 사업은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곳으로 현 시설이 노후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봉방동 및 달천동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시설이기도 합니다.
- 인근 주민들의 민원 중에는 시설이전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나 타 지역으로의 시설이전은 혐오시설 입지문제에 부딪혀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입지여건 또한 더나은 곳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본 사업은 남한강 상류의 수질개선과 시설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
- 악취 및 방류수 수질의 악화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시는 반복 되지 않도록 타 시군의 시설 설치 사례나 운영 사례 등을 비교견학은 물론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부실시 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.

□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관련 국유림 추가매입

- 본 사업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시 절개지의 법면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경사각을 넓히는 등 법면 보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지를 추가로 매입 코자 하는 것으로 법면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.
-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안전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

- 토지(국유지)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 행위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. 답변 요지

▶질의 : 하수시설설치에 따른 시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가?

- 답변 : 시비 부담이 10%내외이기 때문에 문제없음

▶질의 : 국유림도 감정에 의해 매입하는가?

- 답변 : 2개 감정원의 감정가를 토대로 매입하게 됨

▶질의 : 하수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에 차질은 없는가?

- 답변 : 현 설계 완료되어 토지주와 협의 중이거나 협의 추진 예정에 있음

▶질의 : 현 위생처리시설은 언제인가?

- 답변 : 1981년도 시설, 2001년 개선사업 추진

▶질의 : 사업했을 경우 악취문제 해소 가능한가?

- 답변 : 타 시군 예로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

5. 심사 결과

- 2006년 공(시)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7차)안 : 원안가결
 - 노은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
 -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
 - 위생처리시설 개선사업
 -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관련 국유림 추가매입

6. 붙임

- 2006년 공(시)유재산관리계획변경(7차)안 1부. 끝.